힐스테이트 도안 오피스텔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7-1, 677-2

■ **공급대상 :** 오피스텔 392호실 (27타입 2호실, 63타입 1호실, 84타입 389호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0.02.2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모두 최초 분양광고일(2020.04.22.)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 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군별 1건씩 접수 가능하며, 1인당 최대 4개 군으로 4건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 군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4건을 초과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계 법령의 변경에 의한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계약금 10% 완납 이후 당사에 대한 채무이행 및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 취소 및 벌칙 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 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 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2.21부터 적용)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04월 27일(월)	05월 06일(수) 16:00시 이후	05월 07일(목) ~ 09일(토) (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21)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 가능)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 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급내역 및 분양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과 – 분양신고 2호(2020.04.20.)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분양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7-1 외 1필지

■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시공업체 명칭 – 분양사업자 :** 교보자산신탁(주) / 분양대행사 : ㈜상림디엠텍 / 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주)

■ **시행위탁자 :** (주)자이언트

■ **신탁업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 교보자산신탁(주)(시행수탁자)

■ **분양대금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장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6,586.70㎡(오피스텔 : 6,179.30㎡)
- 건축물 연면적 : 71,490.44㎡(오피스텔 : 67,518.92㎡)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5층~지하2층(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등), 지하1층(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피스텔용 부대시설, 주차장 등) 지상1층(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지상29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5층 ~ 지상 29층 3개동 중 오피스텔 총 392호실
- 주차대수 : 556대(오피스텔 528대, 판매 및 근생시설 28대)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각 목의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 **내진설계 등급**

지진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2	Sc	1.2	C	1	4.0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Ⅶ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224(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2023년 05월 준공 및 입주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분양 대상 및 분양규모**

군	타 입	분양호실(수)	분양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1군	84A	217	84.97	27.21	112.18	60.71	172.89	15.83
	84B	106	84.96	27.09	112.05	60.70	172.75	15.83
	84C	54	84.92	27.97	112.89	60.68	173.57	15.82
2군	84D	6	84.97	27.01	111.98	60.71	172.69	15.83
	84E	4	84.96	26.92	111.88	60.70	172.58	15.83
	84F	2	84.96	28.15	113.11	60.70	173.81	15.83
3군	27	2	27.36	10.03	37.39	19.36	56.75	5.10
4군	63	1	63.17	22.00	85.17	44.76	129.93	11.77

■ **공통사항**

- 본 건축물은 동일 블록 내에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본 분양 대상 오피스텔 392실은 8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신청 전 견본주택 방문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금액은 오피스텔 동별, 타입별, 층, 향, 구조, 면적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에 대한 대지를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되었으며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외벽면적 등은 공용면적에 가산됩니다.
- 오피스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부대시설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상기 호실 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부대시설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분양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위치지정이나 구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사업관계자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이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동일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실의 위치에 따라 코어 및 계단실 등의 공용부의 형태는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 방문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공정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로써,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아래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그리고 정부 정책 및 해당 사업관계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 · 시행으로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2020. 2. 21.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관계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관계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동 / 라인	공급호실	층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시
								계약시	1개월이내	2020-09-07	2021-01-07	2021-07-07	2022-02-07	2022-06-07	2022-11-07	
84A	101동 1,4라인 103동 3,4라인	3	2층	101,400	279,000	27,900	408,300	10,000	30,830	40,830	40,830	40,830	40,830	40,830	40,830	122,490
		4	3층	103,700	285,000	28,500	417,200	10,000	31,720	41,720	41,720	41,720	41,720	41,720	41,720	125,160
		4	4층	106,000	291,000	29,100	426,100	10,000	32,610	42,610	42,610	42,610	42,610	42,610	42,610	127,830
		4	5층	108,200	297,000	29,700	434,900	10,000	33,490	43,490	43,490	43,490	43,490	43,490	43,490	130,470
		60	6~20층	110,500	303,000	30,300	443,800	10,000	34,380	44,380	44,380	44,380	44,380	44,380	44,380	133,140
		32	21~28층	112,800	309,000	30,900	452,700	10,000	35,270	45,270	45,270	45,270	45,270	45,270	45,270	135,810
	102동 1,4라인	2	2층	102,700	283,000	28,300	414,000	10,000	31,400	41,400	41,400	41,400	41,400	41,400	41,400	124,200
		2	3층	105,000	289,000	28,900	422,900	10,000	32,290	42,290	42,290	42,290	42,290	42,290	42,290	126,870
		2	4층	107,300	295,000	29,500	431,800	10,000	33,180	43,180	43,180	43,180	43,180	43,180	43,180	129,540
		2	5층	109,500	301,000	30,100	440,600	10,000	34,060	44,060	44,060	44,060	44,060	44,060	44,060	132,180
		30	6~20층	111,800	307,000	30,700	449,500	10,000	34,950	44,950	44,950	44,950	44,950	44,950	44,950	134,850
		16	21~28층	114,100	313,000	31,300	458,400	10,000	35,840	45,840	45,840	45,840	45,840	45,840	45,840	137,520
	103동 1라인	1	2층	96,400	265,000	26,500	387,900	10,000	28,790	38,790	38,790	38,790	38,790	38,790	38,790	116,370
		1	3층	98,200	271,000	27,100	396,300	10,000	29,630	39,630	39,630	39,630	39,630	39,630	39,630	118,890
		1	4층	100,100	277,000	27,700	404,800	10,000	30,480	40,480	40,480	40,480	40,480	40,480	40,480	121,440
		1	5층	103,000	282,000	28,200	413,200	10,000	31,320	41,320	41,320	41,320	41,320	41,320	41,320	123,960
		15	6~20층	104,800	288,000	28,800	421,600	10,000	32,160	42,160	42,160	42,160	42,160	42,160	42,160	126,480
		9	21~29층	106,700	294,000	29,400	430,100	10,000	33,010	43,010	43,010	43,010	43,010	43,010	43,010	129,030
	103동 6라인	1	2층	94,800	259,000	25,900	379,700	10,000	27,970	37,970	37,970	37,970	37,970	37,970	37,970	113,910
		1	3층	96,500	265,000	26,500	388,000	10,000	28,800	38,800	38,800	38,800	38,800	38,800	38,800	116,400
		1	4층	98,100	271,000	27,100	396,200	10,000	29,620	39,620	39,620	39,620	39,620	39,620	39,620	118,860
		1	5층	100,900	276,000	27,600	404,500	10,000	30,450	40,450	40,450	40,450	40,450	40,450	40,450	121,350
		15	6~20층	102,500	282,000	28,200	412,700	10,000	31,270	41,270	41,270	41,270	41,270	41,270	41,270	123,810
		9	21~29층	104,200	288,000	28,800	421,000	10,000	32,100	42,100	42,100	42,100	42,100	42,100	42,100	126,300
84B	101동 2,3라인	1	2층	101,100	279,000	27,900	408,000	10,000	30,800	40,800	40,800	40,800	40,800	40,800	40,800	122,400
		2	3층	103,300	285,000	28,500	416,800	10,000	31,680	41,680	41,680	41,680	41,680	41,680	41,680	125,040
		2	4층	105,600	291,000	29,100	425,700	10,000	32,570	42,570	42,570	42,570	42,570	42,570	42,570	127,710
		2	5층	107,900	297,000	29,700	434,600	10,000	33,460	43,460	43,460	43,460	43,460	43,460	43,460	130,380
		30	6~20층	110,200	303,000	30,300	443,500	10,000	34,350	44,350	44,350	44,350	44,350	44,350	44,350	133,050
		16	21~28층	112,400	309,000	30,900	452,300	10,000	35,230	45,230	45,230	45,230	45,230	45,230	45,230	135,690
	102동 2,3라인	1	2층	102,400	283,000	28,300	413,700	10,000	31,370	41,370	41,370	41,370	41,370	41,370	41,370	124,110
		2	3층	104,600	289,000	28,900	422,500	10,000	32,250	42,250	42,250	42,250	42,250	42,250	42,250	126,750
		2	4층	106,900	295,000	29,500	431,400	10,000	33,140	43,140	43,140	43,140	43,140	43,140	43,140	129,420
		2	5층	109,200	301,000	30,100	440,300	10,000	34,030	44,030	44,030	44,030	44,030	44,030	44,030	132,090
		30	6~20층	111,500	307,000	30,700	449,200	10,000	34,920	44,920	44,920	44,920	44,920	44,920	44,920	134,760
		16	21~28층	113,700	313,000	31,300	458,000	10,000	35,800	45,800	45,800	45,800	45,800	45,800	45,800	137,400
84C	103동 2,5라인	2	2층	99,200	275,000	27,500	401,700	10,000	30,170	40,170	40,170	40,170	40,170	40,170	40,170	120,510
		2	3층	102,400	280,000	28,000	410,400	10,000	31,040	41,040	41,040	41,040	41,040	41,040	41,040	123,120
		2	4층	104,600	286,000	28,600	419,200	10,000	31,920	41,920	41,920	41,920	41,920	41,920	41,920	125,760
		2	5층	106,700	292,000	29,200	427,900	10,000	32,790	42,790	42,790	42,790	42,790	42,790	42,790	128,370
		30	6~20층	108,800	298,000	29,800	436,600	10,000	33,660	43,660	43,660	43,660	43,660	43,660	43,660	130,980
		16	21~28층	111,000	304,000	30,400	445,400	10,000	34,540	44,540	44,540	44,540	44,540	44,540	44,540	133,620
84D	101동 1,4라인 102동 1,4라인 103동 3,4라인	6	29층	118,400	324,000	32,400	474,800	10,000	37,480	47,480	47,480	47,480	47,480	47,480	47,480	142,440
84E	101동 2,3라인 102동 2,3라인	4	29층	118,100	324,000	32,400	474,500	10,000	37,450	47,450	47,450	47,450	47,450	47,450	47,450	142,350
84F	103동 2,5라인	2	29층	116,800	320,000	32,000	468,800	10,000	36,880	46,880	46,880	46,880	46,880	46,880	46,880	140,640
27	101동 3라인 102동 3라인	2	2층	35,700	97,000	9,700	142,400	10,000	4,240	14,240	14,240	14,240	14,240	14,240	14,240	42,720
63	103동 4라인	1	2층	78,100	216,000	21,600	315,700	10,000	21,570	31,570	31,570	31,570	31,570	31,570	31,570	94,710

- 오피스텔 동별, 타입별, 층, 향, 구조, 면적 등에 따라 분양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실별 정확한 분양 대금(공급금액)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통해 접수 받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 광고일(2020.04.22.)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은 각 군별 1건씩 접수 가능하며, 1인당 최대 4개 군으로 4건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 군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4건을 초과하여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청약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동 · 호실은 한국감정원 청약 홈을 통해 전산 추첨하여 결정되며, 별도의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 · 호수 결정방법
일 시	04월 27일(월)	05월 06일(수) 16:00시 이후	05월 07일(목) ~ 09일(토) (10:00~16:00)	한국감정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별 무작위 결정
장 소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21)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 가능)

- 청약은 PC[한국감정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을 통해 청약 가능하며, 청약 전에 전국 시중 은행(국민, 신한, IBK 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 이체 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국민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감정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 가능))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군 공통	1,000,000원 (금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 (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국민은행 전 지점)**

구 분	내용
본인 신청시	• 청약신청서(국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본인 도장(또는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제3자 대리인 청약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이 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분양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도장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국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관계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감정원에서는 당첨자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 건수에 대해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관계자와 계약체결 시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 광고일(2020.04.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빈칸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관계자에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 **추첨 및 당첨자발표**

- 추첨 : 한국감정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층 · 동 · 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일시	당첨자발표 장소
2020년 05월 06일(수) 16:00이후	한국감정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 홈" 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 가능))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동 · 호실 추첨방법	• 한국감정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층 · 동 ·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관계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0년 05월 07일(목) ~ 09일(토)	10:00~16:00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21)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청약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일괄 환불되므로, 계약 시 계약금 전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서 미 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잔여 호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관계자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국민은행	067537-04-023440	교보자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동호수" + "계약자명" → 101-2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금액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관계자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분양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은행명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통(용도:오피스텔 계약용 1통, 설계변경 동의용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법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2통(용도:오피스텔 계약용 1통, 설계변경 동의용 1통)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법인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0.04.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인이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자는 본 공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전화 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상담 등은 청약(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분양광고 및 관련 법령을 청약(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며, 그 내용을 분양받는자 전원에게 알립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수의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계약 호실에 대해 호실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당사 사업관계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 규정」 제9-42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셔야 합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별도 고지 예정
- 대출금액 :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금액의 최대 60% (단, 정부 정책 및 금융권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안의 범위에서 중도금 유이자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중도금 대출 혹은 본인 자금 조달 시에 사업관계자에게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시행위탁자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관계자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 내에서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납부합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대출일로부터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 기간 내 잔금과 함께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자납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선택품목 안내

■ **추가선택 옵션품목**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는 별개입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금액은 오피스텔 분양금액과는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 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드레스룸 특화 선택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선택형	타입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침실 붙박이장	전타입(27,63 제외)	1,375,000	137,500	137,500	1,100,000	택1
수납 강화형(복도창고+드레스룸)	전타입(27,63 제외)	1,980,000	198,000	198,000	1,584,000	
침실 멀티룸(드레스룸+멀티룸)	전타입(27,63 제외)	2,750,000	275,000	275,000	2,200,000	

(2)주방가구특화 선택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선택형	타입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수납특화	전타입(27,63 제외)	880,000	88,000	88,000	704,000	택1
수납특화 + B/I김치냉장고	전타입(27,63 제외)	1,650,000	165,000	165,000	1,320,000	
수납특화 + B/I 김치냉장고 + B/I전자레인지	전타입(27,63 제외)	1,870,000	187,000	187,000	1,496,000	

(3)천장특화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선택형	타입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거실 간접등 (우물천장 2,470)	84A, 84B, 84D, 84E	1,397,000	139,700	139,700	1,117,600	101,103동만 해당
	84C, 84F	1,540,000	154,000	154,000	1,232,000	

(4)기타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선택형	타입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1-01-07	입주지정일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84A, 84B	770,000	77,000	77,000	616,000	
	84C	990,000	99,000	99,000	792,000	
	84D, 84E	880,000	88,000	88,000	704,000	
	84F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현관 에어샤워	전타입(27,63 제외)	660,000	66,000	66,000	528,000	

■ **추가선택 옵션품목 납부계좌 및 입금방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국민은행	067537-04-024418	교보자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동호수" + "계약자명" → 101-2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관계자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해당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 계약자 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추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한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계약금 10% 완납 이후 시행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관계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 분양권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 제 ·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3년 05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사업관계자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관계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 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일자(사용승인 2개월내 지정)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자이언트와 토지를 수탁받은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수탁자인 교보자산신탁(주)이 분양사업자가 되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따라 별도의 신탁계약체결을 요구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 (주)자이언트가 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자이언트임을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은 관련 법률 및 상기 신탁계약에 의하여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 및 신탁 계약 상 업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신탁재산의 한도를 넘는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주)자이언트가 부담합니다.
- ㈜자이언트의 신탁계약상 시행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분양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분양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보자산신탁(주)"과 "(주)자이언트" 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일부해지 또는 일부 호실 소유권 이전 포함)에 시행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등 모든 이행책임 및 지위 포함)는 본 분양계약서 변동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 위탁사 겸 수익자인 "(주)자이언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귀속)됨을 "수분양자"는 인지하고 추후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 대출 원리금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으며, 교보자산신탁㈜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매수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의무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자는 교보자산신탁(주)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주)자이언트는 본 사업 관련 교보자산신탁㈜이 부담하는 채무 및 의무 일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그 채무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시행위탁자 교보자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시행수탁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중 분양계약 해제/해지 시 분양금액 반환 채무 이행 및 공사 지연을 제외한 사유로 발생하는 입주지연 지체상금은 시행위탁자가 책임 처리하고,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은 위탁자 및 시공사가 책임 처리하기로 하며, 시행수탁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신청서의 [타입]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분양광고상[타입별(㎡)]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 광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승인된 최종 건축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 · 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총 대지지분을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호실 당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잔금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에는 84A, 84C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 호실 CG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타입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조경 패턴 및 식재, 시설물 디자인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 설계 시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및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별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 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DA, TOP LIGHT, 생활폐기물보관소, 쓰레기집하시설, 부대시설 실외기실 자전거 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패턴 및 소재, 주변 환경, 인접 대지와의 레벨 차, 단지 내 레벨 차에 따른 단차 처리 방법 및 마감재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리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타입,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동 표시, 주동 외관(동출입구 및 캐노피, 저층부 석재, 창호 유리/프레임,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문주,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외부 난간 형태, 색상 및 높이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내부 및 본 건물의 내 · 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분양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 · 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 된 단지모형 및 건립타입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휀룸 및 지하주차장 휀룸등 DA, 주변현황(단지내외 옹벽 및 조경석, 조경시설, 단지주변 레벨현황등)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 된 창호, 현관 방화문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 도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관계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시행위탁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시행위탁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 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 보수 ·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타입 내부 붙박이장류(신발장, 주방장, 붙박이장, 욕실장, 욕실거울 후면 등) 배면 및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장등의 최종 마감자재(지정 마루판, 벽지 등)는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 · 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분양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트램,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호실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은 각 호실의 타입별, 동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동일 타입의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 공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호실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허가 사항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관계자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관계자에게 위탁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주동외관(동출입구 및 캐노피, 창호 유리/프레임, 난간, 옥탑, 지붕 구조물 등)의 형태와 색채,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평입면계획, 차수판, 외부 난간형태/높이/색상 및 단지조경 등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진행시 현장여건 및 인 · 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에 면한 옥상조경 공간은 102, 103동 코어에서 연결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옥상조경 부분의 주동 저층부에는 수성페인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이는 경관심의시 기준을 준용한 사항으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호실이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단지모형 상 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관계자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각 호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지하주차대수는 556대(오피스텔 528대, 판매 및 근생시설 28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오피스텔 주차장과 근린/판매시설 주차장은 주차차단기로 통제됩니다.
-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므로 주차대수 추가, 용도별 주차대수 변경, 차단기 추가,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지하1층) 등 인 · 허가 사항 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분양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위치는 동서대로 및 도안대로 등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 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관계자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주변도로로 인해 소음, 분진, 야간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지,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으니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인허가 과정에서 또는 동선/성능 개선 등을 위해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부지는 지역냉난방 설치 의무지역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한 중앙공급식 냉 · 난방 및 온수가 공급되며, 냉난방설비를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난방은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냉방은 중앙 냉방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에 설치되어 있는 냉방, 난방설비는 난방과 냉방의 동시 사용은 불가하며 공급되는 열원에 따라 난방 및 냉방의 계절에 따른 선택이 가능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동 오피스텔 옥상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조 및 펌프실, 제연휀이 설치되고, 102동, 103동 옥상에는 오피스텔 및 근생/판매시설용 냉각탑이 설치되어 기기 작동시 인접한 호실에 소음, 진동, 냄새, 연무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시각적 간섭등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어 계약체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근생 및 판매시설의 주방 및 화장실 배기휀이 1층 상부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2층 옥상 정원 및 인근 오피스텔로 냄새 및 진동, 유지관리를 위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기계실포함 저수조등이 103동 하부에 위치에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 될수 있습니다.
- 사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이 102동, 103동 동측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입주민께서는 모형과 카다로그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단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 측면 및 전, 후면에는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동 출입시 소음등의 환경권등이 침해 될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위치 이동 요청등 이의를 제기 할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 일부에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입주자 공동시설, 저수조, 빗물처리시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및 2층옥상에는 어린이 놀이터, 필로티, 제연휀룸, D/A(설비 환기구), 외부계단,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일조권 · 조망권 · 소음 ·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단지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지붕에 상가용 배기휀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냄새 및 진동, 유지관리를 위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사업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산지, 운동시설, 부지 고저차 등 주위 환경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수량, 위치는 평면 타입 및 옵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 건립된 타입의 마감재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타입과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 · 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 및 벽체 돌출치수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실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관계자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 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관계자에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 및 인쇄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시행위탁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가 안내하는 호실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공동장소인 어린이 놀이터, 바닥분수,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 및 상가 지붕 옥상조경 공간 등 각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층 호실은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내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관계자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과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관계자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AS운영실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2.21부터 적용)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관련 사항**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등으로 시공 중 동질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간지 등) 및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정압실 위치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관계자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을 위해 사용된 유인물의 치수는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타입별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전시품 및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및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시공시 설치되지 않으며, 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견본주택 시공을 기준으로 실 시공됨을 상호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대지 경계선 외의 시설물은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가전, 악세사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실 천장에 시공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건축물 용도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 됩니다.(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마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월패드, 디지털 도어록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내 도로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녹지, 단지 주/부 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레벨차에 따른 일부 조경석 및 계단/경사로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교통망 및 도로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에 면한 도로 및 보행자 도로의 레벨과의 관계에 따라 단지 외곽부의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계부에 일부 사면/자연석 및 계단, 경사로의 계획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중심상업지역 내 계획된 오피스텔로, 별도의 소음규정이 없으며, 대로에 면한 위치에 따른 차량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진출입 램프는 102동 1층 필로티에 계획되어 있음. 이에 따라 인접 주동의 저층호실은 소음 및 진동, 차량 전조등 및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매연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TV안테나, 무선통신중계기, 이동통신 안테나 등은 일부 동 옥상에, 태양광전지패널은 102동, 103동 옥상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전동 옥상 및 건축물 높이에 따른 측벽에 피뢰 설비가 설치되오니 인지 바랍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소방차 부서공간), 2층 옥상 산책로 등에 인접한 저층호실에는 옥외보안등, 조경등, 기타 보안시설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동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호실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서는 차량의 문이 기둥 및 벽 등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 각종 CG, 각종 카탈로그 등의 배포광고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조감도와 투시도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색상 및 세부사항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커뮤니티 시설은 향후 실시공시 해당 시설 설치 계획 내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구성상 일부 호실의 경우 외부 벽체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시공시 위치, 규격, 디자인,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벽 디자인(요철계획 등)에 의해 일부호실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외관 디자인은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계획 반영된 사항으로 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1층 상가 및 동출입구 부분은 유리커튼월 및 석재로 계획 반영되어 있으며, 주동은 수성페인트 마감 계획 반영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문주, 램프출입구, 주동출입구, 자전거보관소, D/A, 제연휀룸 등)의 디자인, 색상, 마감재,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지붕층 옥상정원에 대해 식재 종류, 수량, 위치 등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린이 놀이터 위치, 놀이기구 사양, 수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지붕층 외부계단 및 소화물탱크실의 마감은 콘크리트 위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디자인, 색상, 마감재,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지붕 및 외부 난간은 실 시공시 위치에 따라 콘크리트 난간 또는 투시형 난간으로 설치되며, 디자인, 색상,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는 실시공시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단지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호실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본 단지의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제조사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급배기시설, Top Light(천창), DA(환기구), 쓰레기 집하시설, 재활용 쓰레기 보관함 등과 인접한 호실은 냄새 · 소음 및 반사광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주변 도로 너비, 차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해 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등) 및 지형은 인 · 허가 및 관계기관의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는 인접 건물에 의해 일부호실에서는 조망 및 환경권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 식재(소나무 등) 계획으로 인한 일부호실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 외 도로(도시계획도로, 비상차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호실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의 외벽 및 옹벽의 마감재, 색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의 경우 접근성에 있어 다른 주동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차장은 택배차 진입을 고려하여 진입구부터 조업주차까지 진입 높이 및 차로 유효높이가 2.7m로 기타부분은 2.3m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2층~지하5층 지하주차장의 차로 유효높이는 2.3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장치 및 무인택배 보관함은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 주동 공용부(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등) 창호 사이즈는 실 시공시 주거환경 개선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폐쇄장치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 위치와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세대는 복도를 통해 엘리베이터 홀로 접근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홀에는 창호가 계획되어 있으나, 복도구간에는 별도의 창호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외층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단지 내 일부 외부공간의 경우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 DA 및 생활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휴게공간, 외부엘리베이터 등에 의해 일부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각 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이에 의한 주민 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및 주차장 접근의 형평성이 각 주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단지내 일부 레벨차 발생에 따라 102동 위치에서 계단을 통해 이동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필로티, 휴게 공간등에 인접한 호실은 소음에 노출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중 공개공지를 통한 단지 출입구 진입부위는 입주자 편의를 위해 바닥을 포장한 것이며,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 각 주동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주동 주출입구의 형태 및 사이즈는 주동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의 각 주동 출입구 전면에 구조계산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기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의 외부에서 지하, 1층 진출입구로의 접근 동선은 주변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호실은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 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주출입구로부터 각 주동 주출입구까지의 접근의 형평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의 공용부 홀, 복도폭, 계단실 형태 및 치수는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Modified Mericali Intensity Scale) Ⅶ- 0.224g입니다.
- 어린이 놀이터,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호실은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도안대로), 서측에는 공개공지가 각각 설치 될 예정이며, 공공장소 활용으로서 이로 인한 소음 및 환경권 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내에 보도로 제공되는 전면공지(4면 도로와 면하여 계획된 보도)의 대지부분(보도에 매설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지역열원 등 각종 관로 포함)에 대하여 소유권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입주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 내에 계획된 전면공지, 공개공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조경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인하여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주동 및 근린생활(판매)시설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1층과 지하층 공용부는 타용도의 입주/입점/이용자가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신축,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동에 의해 조망권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특성상 층간, 호실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리소, 주차램프, 외부계단,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전체가 외부 도로에 접해 있으며, 이는 24시간 외부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어 본 단지에서의 임의로 일반인의 보행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외부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안전성, 이용 편의성 등에 따라 본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되거나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설계 변경에 의한 단지 내 레벨, 진출입구 위치, 주동 및 시설물의 배치 등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본 분양오피스텔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어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할 수 있으며,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에 실내용 헬스운동기구와 붙박이형 가구(신발장, 락커 등) 설치가 포함(테이블, 의자, 소파 등 이동식 가구와 비품은 제외)되며, 인포메이션 데스크 및 붙박이형 가구의 형태는 카탈로그에 게시된 그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1층 101동, 103동 하부에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시설 이용 접근성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해당 동의 향과 층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단지 내 인동거리에 따른 일조량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없으니, 해당 동의 위치 및 향을 고려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각 동 측면 및 전, 후면에는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호실은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층 상부 벽면에 주방배기 탈취유닛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인접호실에는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해 사생활권등의 환경권이 침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층 옥상에 상가 설비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층 외부, 2층 옥상정원 및 각 동 측벽, 건물 옥상에 경관조명이 설치 될 예정이며 빛의 산란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설비는 오피스텔에 적용 되는 설비로 상가시설 전기에는 적용 되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오피스텔 유의사항**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호실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시공시 각 단위호실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월패드,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벽(PD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설계변경 포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수입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관계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본 공사 및 하자 보수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나 견본주택에는 마감재 이외에 옵션품목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vein: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vein: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씽크대 내부의 가구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 내 설치되는 악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호실별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별 각 부분의 창호 크기 등은 호실 타입별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크기와 상이 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호실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호실에 설치되는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 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대피실의 크기 및 디자인은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방 대피를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타입별 대피실 내 단열재 설치 여부가 상이합니다.
- 84B, 84E타입의 경우 동 호라인 별 소방차 접근 위치가 상이하여 동일타입이더라도 소방관 진입창 위치가 상이하여 동별 위치에 따라 실-4의 창호 크기가 상이합니다.
- 27타입만 소방관진입창 유효사이즈 확보를 위해 실-1의 창호가 분할형 이중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타입은 전체 실-1에 한 해 분할형 이중창 적용)
- 101, 103동과 102동의 층고가 상이하므로 동일 타입의 경우에도 천장 내부의 높이는 상이하게 시공 됩니다 또한, 102동 84A, B 타입에 한하여 천장고 특화 옵션이 설치되며 101, 103동의 경우 천장특화 옵션 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 우물천장의 간접등 유상옵션 품목은 84A(102동제외), B(102동제외), C, D, E, F타입 의 경우 선택이 가능하며, 타입별 우물천장의 크기와 위치는 상이합니다.)
- 84D, 84E, 84F타입은 서비스 공간으로 다락이 설치되나, 다락 외측의 옥상공간은 해당 호실의 위치에 따라 면한 옥상의 면적이 상이합니다.
- 84D, 84E 타입은 해당 동의 위치에 따라 다락으로 연결되는 세대내부 계단의 단 높이가 상이합니다. (101, 103동보다 102동의 층고가 높아 동일 타입에서도 102동의 계단 단 높이가 더 높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일부 타입의 창호 및 난간 사이즈, 창호 프레임 및 난간 색상은 추후 경미한 설계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수납가구와 주방가구, 욕실가구 및 샤워부스, 마루, 목창호, 방화문은 본 공사 시 시공사별 입찰 결과에 따라 제조사,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폭과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욕조하부, 드레인 주변, 양변기 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타일은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이해를 돕기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 실시공시 설계도면 및 관계 법규에 의해 시공될 예정입니다.
- 호실 현관문 및 호실 내 철재도어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된 실(타입)은 유, 무상 옵션품목을 포함하여 시공되므로 타입별, 선택 품목별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등은 "사업관계자" 또는 "사업관계자가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의 내화 시험 등에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및 분전반의 위치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방/거실/복도 바닥, 욕실 벽/바닥, 복도/거실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는 실시공시 견본주택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아트월 타일 모서리 부위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 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부 설치되는 붙박이장의 형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평면 타입에 따라 길이 및 타입 (워크인 타입 등)이 변경 제공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및 모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벽체 두께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 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같은 타입이라도 타입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호실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호실별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공동현관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OS 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기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연동)
- 주차위치 저장 기능은 사용자가 스마트키 또는 스마트폰 APP 활성화 후 위치 저장 버튼을 작동하여야 합니다.
- 원패스 시스템과 주차위치 시스템은 기본 스마트폰 APP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며, 스마트키는 호실당 1개 지급 기준입니다.(추가 필요 시 입주자는 별도 구매 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주방TV,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Hi-oT(=사물인터넷 IoT 서비스) 및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Hi-oT 서비스(현대오토에버)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호실 내부 무선 WiFi용 무선 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되는 냉방기는 개별이 아닌 중앙냉방시스템으로 설치될 예정이므로 기계실 및 냉각탑 점검 또는 고장 시 냉방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침실이 인접호실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벽면에는 실내 환기장치용 환기캡 설치되며 설치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기기(천장형 팬코일유닛)가 각 실(27 2대, 63 3대, 84 A/B/C/D/E/F 4대_주방 및 다락제외)에 설치 되며 실내기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 내 냉방용기기(팬코일유니트)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냉방, 난방 사용요금은 각 실별 개별 계량기(냉방용, 난방용)에 의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 환기설비인 바닥열 급기장비가 거실(27 타입), 세탁실(63, 84C, 84F 타입), 다용도실(84A, 84B, 84D, 84E 타입) 상부에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 시공(다용도실)되고 일부 실(거실, 세탁실) 상부에는 점검구가 설치 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호실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환기 설비의 필터는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에는 가스 배관이 설치 되지 않으므로 가스쿡탑 등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에는 별도의 자동식소화기가 설치 되지 않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내 설치되는 악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은 비 난방구역으로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각종 설비배관의 노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호실별, 타입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씽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및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위치, 바닥레벨, 단차부위, 천정마감, 세대 환기설비, 수전, 전기스위치 콘센트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사양인 에어샤워시스템은 제품의 외형 및 자재 사양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사양인 에어샤워시스템 선택시 신발장내 가구 디자인이 변경되며 필터 및 집진봉투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이해를 돕기위한 모델하우스 가시설물로 실시공시 설계도면 및 관계 법규에 의해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위실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부(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63, 84C, 84F 타입의 경우에는 소켓배수전이, 63의 경우에는 샤워수전이 설치 되지 않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D, 84E, 84F타입의 다락 공간에는 바닥 난방, 냉방기기인 천정형 팬코일유니트등 설비시설(수전설비 포함)이 제공 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내 대피실에는 법정 소방시설인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며, 피난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 방향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내 현관 및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설치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호실별 배연창이 1개소씩 외기창호에 설치되며, 단, 배연창은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 옥상 다락의 경우 각 동별, 호실별 옥상구조물 및 기계설비등의 설치에 따라 옥외 환경 및 활용 공간이 상이 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동, 각 호실에서 2층 옥상 휴게 공간 접근성이 상이 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는 오피스텔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인계되므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84C타입 침실1 문 개폐시 욕실 출입에 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남측 용계동 677-4,5 부지 건물로 인하여 조망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건축물은 위탁자 (주)자이언트, 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및 사업약정(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주)자이언트이며,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시행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시행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사업부지(향후 사용검사 예정인 본 공고를 포함)에 대한 신탁계약 해제나 해지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주)자이언트와 수탁자(본 분양광고 상의 '분양사업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분양대상물건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시행위탁자인 (주)자이언트에게 포괄 면책적으로 승계 됩니다.

■ **사업관계자**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위탁자	(주)자이언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45, 1806호(봉명동)	160111-0512312
시행수탁자, 분양대금관리자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10111-1617434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110111-2153015
분양대행사	(주)상림디엠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706호	135811-0097650
감리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46길 8(논현동, 동일빌딩)	110111-0553720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교보자산신탁(주) / 사업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16층(대치동, 대치타워)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008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분양대상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용도 · 규모**

①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7-1~2

② 지목 : 대

③ 용도 : 오피스텔 및 판매/근린생활시설

④ 규모 : 지하5층 ~ 지상 최고 29층 (오피스텔 지상2층 ~ 지상 29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 등기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21 (T. 042-824-9505)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s://www.hillstate-hec.co.kr/doan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분양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42-824-9505

총 392실 84㎡A, 84㎡B, 84㎡C, 84㎡D, 84㎡E, 84㎡F, 63㎡, 27㎡

힐스테이트 도안

www.hillstate-hec.co.kr/doan

시행 KYOBO 교보자산신탁 위탁 GIANT 시공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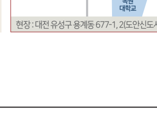

현장 : 대전 유성구 용계동 677-1, 2(도안신도시)

견본주택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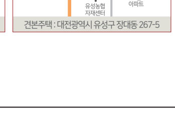

견본주택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67-5

힐스테이트 도안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광고 공고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7-1, 677-2
■ **분양대상 :** 상업시설 43호실 (판매시설 7실 / 근린생활시설 36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본 상업시설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과-분양신고 3호(2020.05.06)로 분양신고 처리 알림**
■ **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2020.02.2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상업시설의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매제한:** 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상업시설로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추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한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계약금 10% 완납 이후 시행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관계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제1항 제5호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잔여 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 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_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20.2.21부터 적용)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분양 받은 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내역 및 분양금액

■ **공급분양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7-1 외 1필지
■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시공업체 명칭 - 분양사업자 :** 교보자산신탁(주) / 분양대행사 : (주)정석하우징 / 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주)
■ **시행위탁자 :** (주)자이언트
■ **신탁업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 교보자산신탁(주)(시행수탁자)
■ **분양대금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장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분양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6,586.70㎡ (판매시설 : 111.32㎡, 근린생활시설: 296.08㎡)
- 건축물 연면적 : 71,490.44㎡ (판매시설 : 1,259.55㎡, 근린생활시설: 2,711.97㎡)
- 분양규모 : 지하 5층 ~ 지상 29층 중 판매시설 (지하1층 ~ 지상1층, 7실) /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 지상1층, 36실)
- 주차대수 : 556대 중 (오피스텔 528대,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28대)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각 목의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내진설계 등급**

지진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2	Sc	1.2	C	1	4.0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Ⅶ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224(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예정일 및 입점예정일 :** 2023년 05월 준공 예정 / 2023년 05월 입점 예정 (입점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 일정은 추후통보)
■ **분양대상 및 분양 규모**

[단위 : ㎡]

용도	층별	호실	전용면적	공용면적 (복도/계단)	기타 공용면적 (기계/전기)	지하 주차장	계약면적	대지지분
판매시설	지상 1층	4	400.62	68.07	32.58	225.18	726.45	74.52
판매시설	지하 1층	3	197.79	33.61	16.09	111.17	358.66	36.80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35	1,511.03	256.73	122.90	849.32	2,739.98	281.07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1	80.75	13.72	6.57	45.39	146.43	15.01

■ **상업시설 공통사항**
- 본 건축물은 동일 블록 내에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본 분양 대상 상업시설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신청 전 견본주택을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금액은 호실별 면적, 층, 향, 구조, 고객이동동선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실별 대지지분은 상업시설에 대한 대지를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중심선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 됩니다.
- 상업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부대시설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상기 호실 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부대시설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분양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위치지정이나 구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상업시설의 중도금은 사업관계자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이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공정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로써,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아래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상업시설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그리고 정부 정책 및 해당 사업관계자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 · 시행으로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2020. 2. 21.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관계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관계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분양호실 및 분양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호실	용도	계약면적					대지지분	분양금액					납부시기별 금액		
			전용	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부가세	분양가 (VAT포함)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1층	101	판매시설	65.26	11.09	5.31	36.68	118.34	12.14	278,983	559,970	838,953	55,997	894,950	89,495	89,495	715,960
	102	판매시설	94.93	16.13	7.72	53.36	172.14	17.66	405,816	814,540	1,220,356	81,454	1,301,810	130,181	130,181	1,041,448
	103	판매시설	120.66	20.5	9.81	67.82	218.79	22.44	515,792	1,035,280	1,551,072	103,528	1,654,600	165,460	165,460	1,323,680
	104	판매시설	119.77	20.35	9.74	67.32	217.18	22.28	532,473	1,068,770	1,601,243	106,877	1,708,120	170,812	170,812	1,366,496
	105	근린생활시설	71.65	12.18	5.83	40.28	129.94	13.33	318,585	639,450	958,035	63,945	1,021,980	102,198	102,198	817,584
	106	근린생활시설	58.58	9.95	4.76	32.93	106.22	10.9	250,408	502,620	753,028	50,262	803,290	80,329	80,329	642,632
	107	근린생활시설	53.27	9.05	4.33	29.94	96.59	9.91	227,705	457,050	684,755	45,705	730,460	73,046	73,046	584,368
	108	근린생활시설	53.45	9.08	4.35	30.04	96.92	9.94	228,489	458,610	687,099	45,861	732,960	73,296	73,296	586,368
	109	근린생활시설	59.70	10.14	4.86	33.56	108.26	11.1	265,424	532,760	798,184	53,276	851,460	85,146	85,146	681,168
	110	근린생활시설	58.37	9.92	4.75	32.81	105.85	10.86	259,520	520,900	780,420	52,090	832,510	83,251	83,251	666,008
	111	근린생활시설	40.85	6.94	3.32	22.96	74.07	7.6	181,599	364,510	546,109	36,451	582,560	58,256	58,256	466,048
	112	근린생활시설	39.91	6.78	3.25	22.43	72.37	7.42	177,436	356,140	533,576	35,614	569,190	56,919	56,919	455,352
	113	근린생활시설	31.77	5.40	2.58	17.86	57.61	5.91	141,250	283,500	424,750	28,350	453,100	45,310	45,310	362,480
	114	근린생활시설	30.56	5.19	2.49	17.18	55.42	5.68	135,877	272,730	408,607	27,273	435,880	43,588	43,588	348,704
	115	근린생활시설	32.51	5.52	2.64	18.27	58.94	6.05	144,505	290,050	434,555	29,005	463,560	46,356	46,356	370,848
	116	근린생활시설	35.47	6.03	2.88	19.94	64.32	6.6	163,760	328,700	492,460	32,870	525,330	52,533	52,533	420,264
	117	근린생활시설	43.99	7.47	3.58	24.73	79.77	8.18	188,054	377,460	565,514	37,746	603,260	60,326	60,326	482,608
	118	근린생활시설	35.73	6.07	2.91	20.08	64.79	6.65	152,743	306,570	459,313	30,657	489,970	48,997	48,997	391,976
	119	근린생활시설	44.00	7.48	3.58	24.73	79.79	8.18	188,105	377,550	565,655	37,755	603,410	60,341	60,341	482,728
	120	근린생활시설	32.21	5.47	2.62	18.1	58.4	5.99	137,676	276,340	414,016	27,634	441,650	44,165	44,165	353,320
	121	근린생활시설	30.66	5.21	2.49	17.23	55.59	5.7	131,056	263,040	394,096	26,304	420,400	42,040	42,040	336,320
	122	근린생활시설	32.53	5.53	2.65	18.28	58.99	6.05	144,630	290,300	434,930	29,030	463,960	46,396	46,396	371,168
	123	근린생활시설	32.75	5.56	2.66	18.41	59.38	6.09	134,386	269,740	404,126	26,974	431,100	43,110	43,110	344,880
	124	근린생활시설	33.79	5.74	2.75	18.99	61.27	6.29	138,668	278,320	416,988	27,832	444,820	44,482	44,482	355,856
	125	근린생활시설	42.54	7.23	3.46	23.91	77.14	7.91	174,578	350,420	524,998	35,042	560,040	56,004	56,004	448,032
	126	근린생활시설	39.78	6.76	3.24	22.36	72.14	7.4	163,270	327,700	490,970	32,770	523,740	52,374	52,374	418,992
	127	근린생활시설	39.78	6.76	3.24	22.36	72.14	7.4	163,270	327,700	490,970	32,770	523,740	52,374	52,374	418,992
	128	근린생활시설	50.88	8.64	4.14	28.6	92.26	9.46	208,800	419,100	627,900	41,910	669,810	66,981	66,981	535,848
	129	근린생활시설	51.06	8.68	4.15	28.7	92.59	9.5	209,540	420,600	630,140	42,060	672,200	67,220	67,220	537,760
	130	근린생활시설	41.96	7.13	3.41	23.58	76.08	7.81	172,180	345,600	517,780	34,560	552,340	55,234	55,234	441,872
	131	근린생활시설	39.81	6.76	3.24	22.38	72.19	7.41	136,153	273,270	409,423	27,327	436,750	43,675	43,675	349,400
	132	근린생활시설	43.65	7.42	3.55	24.53	79.15	8.12	149,278	299,620	448,898	29,962	478,860	47,886	47,886	383,088
	133	근린생활시설	54.74	9.30	4.45	30.77	99.26	10.18	187,195	375,750	562,945	37,575	600,520	60,052	60,052	480,416
	134	근린생활시설	51.39	8.73	4.18	28.89	93.19	9.56	175,753	352,770	528,523	35,277	563,800	56,380	56,380	451,040
	135	근린생활시설	65.79	11.18	5.35	36.98	119.3	12.24	224,999	451,610	676,609	45,161	721,770	72,177	72,177	577,416
	136	근린생활시설	41.12	6.99	3.34	23.11	74.56	7.65	168,740	338,700	507,440	33,870	541,310	54,131	54,131	433,048
	137	근린생활시설	40.00	6.80	3.25	22.48	72.53	7.44	164,153	329,470	493,623	32,947	526,570	52,657	52,657	421,256
	138	근린생활시설	28.39	4.82	2.31	15.96	51.48	5.28	116,505	233,850	350,355	23,385	373,740	37,374	37,374	298,992
	139	근린생활시설	28.39	4.82	2.31	15.96	51.48	5.28	116,505	233,850	350,355	23,385	373,740	37,374	37,374	298,992
지하 1층	B101	판매시설	44.29	7.53	3.60	24.89	80.31	8.24	33,098	66,420	99,518	6,642	106,160	10,616	10,616	84,928
	B102	판매시설	66.38	11.28	5.40	37.31	120.37	12.35	49,604	99,560	149,164	9,956	159,120	15,912	15,912	127,296
	B103	판매시설	87.12	14.80	7.09	48.97	157.98	16.21	65,103	130,670	195,773	13,067	208,840	20,884	20,884	167,072
	B104	근린생활시설	80.75	13.72	6.57	45.39	146.43	15.01	60,338	121,120	181,458	12,112	193,570	19,357	19,357	154,856

- 상기 내정가에는 각 호별 소유권 이전 관련 비용 및 취 · 등록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금액임.
- 상기 면적은 벽체 중심선 기준 면적이며,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른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면적은 건축허가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실별 정확한 분양 대금(공급금액)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

구 분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납부일정	계약 시	2021.01.07	입점 지정일

-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며 납부기일에 맞추어 아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통지하도록 예정임.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상업시설 청약 시 유의사항**
분양광고일(2020.05.08.)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함.
-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함.
- 청약자는 신청 호실 및 성함을 정확히 기입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관계자는 책임지지 않음.
-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0.05.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일정	장소
청약일시	2020년 05월 13일 10:00 ~ 11:00	힐스테이트 도안 견본주택 3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67-5)
추첨 및 당첨자 발표	2020년 05월 13일 12:00 ~ 13:00	
계약일시	2020년 05월 13일 14:00 ~ 18:00	

- 제3자 대리청약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청약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 반드시 청약참여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접수는 사업관계자의 견본주택에서만 함. (인터넷 청약 불가)
- 특정 업종은 제한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유해시설물 설치 및 운영은 불가함.
- 지정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음.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액 : 총 분양금액의 10% (VAT 포함)
- 청약신청금 입금 시 신청 호실 및 청약자 성함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예시 : 00호 홍길동 청약 시 → "00호 홍길동"으로 입금
- 청약신청금 납부 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이에 따른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청약신청금 입금 계좌**

납부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내용
KB국민은행	067537-04-024421	교보자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호실" + "계약자명" → 101 홍길동)

■ **분양 방법 :** 공개 청약 추첨 분양 방식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호실을 지정하여 청약하며, 해당 호실 내에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 선정 후 서류심사 부적격자 발견 시 무효처리하며 어떠한 이의도 주장할 수 없음.
- 당첨자가 부적격자로 무효처리된 점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관계자가 임의 분양할 수 있음.
- 기타 구체적인 분양조건에 대해서는 사전 문의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청약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본인 신청시	• 청약신청서 접수증(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자 인감 및 인감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 거주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청약 신청금(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청약 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본인 명의) / 낙첨시 환불신청서

법인 신청시	• 청약신청서 접수증(견본주택에 비치) •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주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 • 청약신청금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자 법인명의)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구비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상업시설 청약 위임용 1부)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서명 또는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상업시설 견본주택에 비치)

※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0.05.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약금을 입금하고 신청서류도 제출해야 청약으로 인정됨. 청약금만 입금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이 무효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환불일시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주 영업일 이내로 지급.(청약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환불방법 : 청약신청 시 제출한 명의의 환불용 계좌로 온라인 입금됨.(단,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 제출 등으로 환불이 안 될 경우 사업관계자가 책임지지 않음)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 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0년 5월 13일(수)	14:00 ~ 18:00	견본주택 3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67-5)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금액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관계자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분양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분양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 수납불가) ※ 예시 : 105호 홍길동 계약 시 → "105홍길동"으로 입금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관계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예금주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의한 분양사업자 교보자산신탁(주)이며, 교보자산신탁(주)가 분양 수입금을 관리함.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구 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KB국민은행	067537-04-023453	교보자산신탁(주)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내 용
본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2통(용도:상업시설 계약용 1통, 설계변경 동의용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법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2통(용도:상업시설 계약용 1통, 설계변경 동의용 1통)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법인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상업시설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단, 주민등록등본은 최초 분양광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인이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수의 분양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 계약 호실에 대해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관계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본 상업시설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제9-42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별도 고지 예정
- 대출금액 : 상업시설의 경우 분양금액의 최대 10%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중도금 대출 혹은 본인 자금 조달시에 사업관계자에게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거나 할인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지정 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시행위탁자는 분양받은 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관계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 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10% 내에서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입점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입점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인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자납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상업시설로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추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한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나 계약금 10% 완납이후 시행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관계자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 분양권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 법령 제 ·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동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점 예정일 :** 2023년 05월 예정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함)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자이언트와 토지를 수탁받은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수탁자인 교보자산신탁(주)가 분양사업자가 되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신탁계약체결을 요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 (주)자이언트가 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자이언트임을 계약자는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련 법률 및 상기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 및 신탁 계약 상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신탁재산의 한도를 넘는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자이언트가 부담합니다.
- ㈜자이언트의 신탁계약상 시행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받은 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분양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보자산신탁(주)"와 "(주)자이언트" 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일부해지 또는 일부호실 소유권이전 포함)에 시행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등 모든 이행책임 및 지위포함)는 본 분양계약서 변동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자이언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귀속)됨을 "분양받은 자"는 인지하고 추후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 대출 원리금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으며, 교보자산신탁㈜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매수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 및 의무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자는 교보자산신탁(주)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주)자이언트는 본 사업 관련 교보자산신탁㈜가 부담하는 채무 및 의무 일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그 채무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광고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시행수탁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중 분양계약 해제/해지 시 분양금액 반환 채무 이행 및 공사 지연을 제외한 사유로 발생하는 입점지연 지체상금은 시행위탁자가 책임 처리하고,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은 위탁자 및 시공사가 책임 처리하기로 하며, 시행수탁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일반사항**
- 상가의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은 신청자(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상업시설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며, 그 내용을 분양받는 자 전원에게 알립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평형 환산방법=면적(㎡) x 0.3025 또는 면적(㎡) ÷ 3.3058)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공용화장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부분, 계단실 등)은 상가 전체 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음.
- 실 계약면적과 대지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 시 분양금액에 의한 정산정리 함.
- 실 당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잔금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가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 및 수단이 될 수 없음에 대하여 동의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VAT)의 환급을 받을 필요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사업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시행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VAT) 환급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관계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상가에 대한 관리운영은 입점 후 상가자치 관리운영 위원회를 결성하여 계약자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키로 함.
- 점포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적법한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며 당해 인 · 허가 관청에 문의하여야 함.
- 점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영업개설 인 · 허가 등록, 용도변경에 따른 시설물 추가사항)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함.
- 입찰자는 분양광고, 점포시설 용도 및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 학원, 교습소 ,유치원 등의 용도로 개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교육청의 등록, 인가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사업관계자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입점 시 및 입점 후 업종중복에 대해서는 계약자 상호간의 협의로 처리하기로 하며, 사업관계자와는 일체 무관함.
- 입점시점에 본 상업시설에 음식점 및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사생활침해, 소음, 냄새, 빛 등에 불편이 생길 수도 있음.
-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내 ·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여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추후 발생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추후 사업관계자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가와 인접한 일부동의 입점자들로부터 상가영업과 관련하여 사생활침해, 소음, 냄새, 빛 등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영업과 관련한 민원은 입점자가 해결하여야함.
-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용승인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기타 점포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진열대, 상 · 하수도, 기타배관, 전기시설 및 간판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함.
- 기존 2개 점포를 1개 점포로 구성 하는 등의 기시공 칸막이 벽체 철거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내력벽 구조 변경은 불가하며,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건축, 전기, 설비 공사 등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함.
- 내부 칸막이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건축, 전기 설비 등 해당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자가 부담함.
- 영업을 위한 시설공사 및 입점은 사용 승인을 득한 후,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입점증(시행위탁자 혹은 시공사 발행)을 교부 받아야 가능함.
-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관계자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함.
- 토지 소유권 이전은 입점일과 관계없이 미준공 및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일 이후 계약자의 주소변경이 발생 할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관계자에 서면(주민등록등본 등)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통보누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관계자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본인 계약호실의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본 부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본 상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창궐,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 된 공사 일정 및 입점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공공 통행로 및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계약자 임의로 시설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조경물 유지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임.
-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 외부시설물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점 시에 대지의 확정 측량 또는 경미한 시공변경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점 시 일부 화장실에 인접한 점포의 경우 소음 및 악취가 발생 할 수 있음.
- 건축허가도서 이외의 진입로 및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 · 확보를 요구할 수 없음.
- 본 상가 주변에 단지 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여 차량 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각 점포의 층고/천장고, 창호(출입문 포함)의 크기, 레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점포 내부에 돌출 기둥이 계획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 전에 기둥의 위치와 크기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가 내부 기둥 및 벽체 등의 벽체공유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됨.
- 상가 내부 및 단지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분양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 · 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휀룸 및 지하주차장 휀룸용 DA, 주변현황(단지내외 옹벽 및 조경석, 조경시설, 단지주변 레벨현황 등),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 현관 방화문, 도어 및 그릴, 슬라이딩도어 등은 본공사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점포는 외부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간판 설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상가의 광고물(간판 등) 설치는 계약자 부담으로 함.
- 옥외광고물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옥외광고물을 설치계획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본지역은 지역 냉 · 난방공급지역으로 에어컨 실외기는 설치할 수 없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건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관계자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점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물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광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름.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점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사업지 위치는 동서대로 및 도안대로 등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점자는 사업관계자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동서대로 및 도안대로 등 주변도로로 인해 소음, 분진, 야간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지,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점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건물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 및 2층 옥상에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제연휀룸,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실은 일조권 · 조망권 · 소음 ·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될 수 있음.
- 2층 옥상은 오피스텔 입주자용으로 계획된 사항으로, 상가 입점자 및 이용자의 이용이 제한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없음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입점 후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불법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바람.
- 내력벽의 구조 변경은 불가하며,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건축, 전기, 설비 공사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함.
- 내부 칸막이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건축, 전기, 설비 등 해당하는 모든 공사는 계약자가 부담함.
- 건축법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관계자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존속기간을 따르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
- 모든 분양대금은 "분양계약서"에 의거 분양대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하며, 분양 계약서상 기재 된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함.
- 분양대금은 본 신축사업의 대지비, 공사비, 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본 상업시설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관계자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입점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AS운영실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본 상업시설의 명칭은 '힐스 에비뉴 도안'으로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에 소재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상업시설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관계자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신고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및 홍보물 관련 사항**
- 견본주택 내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에 표현된 외관 디자인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인허가 협의에 따라 입면 디자인, 경관조명, 출입구, 색채, 몰딩, 창호, 옥상장식물, 줄눈,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 조명설치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의 조경계획(식재, 포장, 조경 등), 각종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주변의 기반시설(도로,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에 면한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계단/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대지의 현황측량 레벨에 따라 단지 내부의 레벨 계획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에 설치되는 옥탑 조형물의 디자인, 형태, 색상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판넬의 설치 위치도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붕에 설치되는 냉각탑은 실 시공시 용량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의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에 인접한 상업용지에는 향후 해당 블록의 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건립되는 사항으로 해당 계획에 대해서는 당 사업과 무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간지 등) 및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정압실 위치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관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을 위해 사용된 유인물의 치수는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평면도, 모형, 이미지 컷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및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견본주택 모형을 기준으로 실 시공됨을 상호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함.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 경계선 외의 시설물은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 하시기 바람)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람 (평형환산법 : 호별면적(㎡) X 0.3025 또는 호별면적(㎡)/3.3058)
- 면적은 소수점 2째자리 까지 표현되며, 이 경우 면적 계산상 소수점 정산 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시 면적의 오차 발생으로 일부 호실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의 변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점포별 내 · 외부 기둥, 창문 프레임의 유무 및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분양목적물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관, 조경계획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준공 시까지 각 점포의 면적, 위치, 보행동선, 입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주차대수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조감도 및 컴퓨터그래픽,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공사시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 인쇄물(카다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 (건축물, 조경, 시설물, 각 호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크기, 형태, 색상, 재질 등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및 본 공사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출입문 등의 상세사항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도서에 준하며, 향후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건물 및 시설물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층고, 천장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주차경사로)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도시 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업지 지반 레벨(계획)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및 공공보행통로 등의 조경 및 식재계획, 수공간, 시설물 등의 계획은 특화계획, 인허가청 협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점포별 간판 설치위치는 해당 점포의 바닥 레벨 및 층고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호실의 경우, 상가 천장 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DA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개별 점포 간판등의 사인물은 지정된 위치 및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스크린 및 쓰레기 집하장으로 인해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승강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사업관계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로비, 승강기 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계단 및 승강기 등의 접근방식은 사업관계자의 결정에 따르며, 이로 인해 사업관계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 외부 조경, 시설물, 옥상조경, 기계설비(급배기팬, 급배기구 등) 등에 의하여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및 조망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피트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배선위치 및 우 ·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분양목적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 되었고, 호실간 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음.
- 인허가 상의 이유로 상가 내부에 기둥이 설치되어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거나, 내부 실에 Dead-space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와 기둥 크기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점포 내 천장속에는 공동사용을 위한 설비/전기/통신 등의 시설물이 관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훼손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설치는 지양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점포별 주방 설치에 따른 연기 배출 시설 및 덕트 공사시에는 인접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에 소음전달 및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 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일부 호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고, 복도 및 계단실 일부에 가스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임의로 철거 및 변경이 불가함.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 될 수 있음.
- 각 점포별 급수, 공급 배관이 설치되며, 급수배관은 계량기를 설치하고 밸브마감 처리하며 밸브 이후 공사는 입점자 공사 분으로 시행하여야 함.
- 각 점포에는 별도의 온수배관이 없으므로 필요시 계약자가 별도로 온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주방 등의 시설이 입점하는 경우 배수구 연결 시 그리스트랩등을 설치(입점자 부담)하여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각 점포 내에는 기본 급수 및 배수 시설이 임의적인 위치에 설치되며 추후 입점자가 개별적으로 내부배관을 설치하여야 함.
- 급수 요금은 각 점포별 개별 계량기에 의해 부과되며 공용부분 발생되는 각 종 비용은 상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점포별 요금 분개 관리 해야함.
- 각 점포별 취사를 위한 열원은 LNG(액화천연가스)이며 기본 가스배관(각 점포별 천정 내 분기배관에 밸브마감)만 설치되므로 각종 인허가 사항과 밸브 이후 내부배관 설치, 계량기 설치 및 가스시설 분담금은 점포 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점포 내에 기계 환기 설비와 환기용 디퓨져가 설치되어 천정 공간 사용에 제약 및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각 점포내 환기설비 적용에 따른 외부 입면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상업시설 단지는 지역난방의무지역으로 실별 냉 · 난방용 팬코일유니트가 설치되며, 입점자는 개별적인 냉난방장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실외기실은 구획되어있지 아니한바 이와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관리주체와 협의해야 함.
- 각 점포별 냉난방설비는 난방과 냉방의 동시 사용은 불가하며 공급되는 열원에 따라 난방 및 냉방의 계절에 따른 선택이 가능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냉난방 사용요금은 각 호실은 개별 계량기(냉난방용)에 의하며, 공용부분은 별도 계량 후 전체 호실을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입점자와 관리주체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각 점포별 냉난방설비(팬코일유니트)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냉난방 공급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중앙열원 공급시간은 입점자와 관리주체가 별도 협의하여 정해야 함.
- 주방 배기 장비(1층 상부 벽면설치)는 구역별로 공용 사용하므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구역별 공동 분담하고 공동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음식점 입점 시 주방 등의 냄새로 인해 입주자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은 입점자가 직접 해결해야 함.
- 일부실 1층 상부 벽면에 주방 급/배기시설 등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 또는 장비설치공간 하부에는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해당 점포 확인은 단지 모형내 외부 그릴 표기로 확인 가능함)
- 각 호실별 주방용배기는 기본덕트(천장속배기용 분기덕트-0.5M)만 공급되며 식당 입점 시에는 주방후드용 덕트 연장시공 및 후드설치는 입점자 부담이며, 주방후드시공 시 방화용풍량조절댐퍼(FVD)와 상업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주방후드 내에 소방법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일부 점포의 경우 단지내 D.A(기계실 및 주차장등의 급,배기구)가 인접하여 이로 인한 소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모형과 카다로그 상의 위치를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일부실에 '소방법'에 따른 공용 옥내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입점 후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 위치에 따라 일부 실에 화재 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내부 창호에는 화재시 제연 등의 이유로 복도측 창호 하부 또는 출입문 등에 그릴이 설치될 수 있음.
- 지상 1층에 Dry Area(급배기타워)와 도시가스 관련시설, 맨홀, 실외기 등 공동사용을 위한 기반시설물이 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생시설의 경우 각 점포의 전기, 수도(급수)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며, 계약 및 분양 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또한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입점자 본인의 책임이며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전용면적 내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로 인하여 전용면적 내 입점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입점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건물의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천정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점포 상부에는 실내 환기를 위한 환기장비 및 냉난방기기가 천정 마감여부에 따라 노출/비노출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장비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 1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천장 내부에 급, 배수 및 덕트 등 설비계획에 따라 위치별로 천장 높이가 다를 수 있고 배관 점검구 및 배관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내 쓰레기 집하시설 인근 점포의 경우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모형을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상업시설 외벽 기본마감(지상1층)은 커튼월 및 석재 마감 적용 예정이며, 실제 공사 시 색상, 패턴, 마감위치 및 바탕에 따라 마감재는 입점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업시설 외 시설물 등의 마감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업시설 지붕측 옥상정원은 오피스텔 입주자용으로 계획된 시설이므로 식재 종류, 수량, 위치 등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생시설 입점자 및 이용자의 이용을 위한 추가 동선 계획을 요구할 수 없음, 어린이 놀이터 위치, 놀이기구 사양, 수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상업시설 지붕측 외부계단 및 오피스텔 저층부 마감은 콘크리트 위 수성페인트 마감이며, 디자인, 색상, 마감재,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상업시설 지붕 및 외부 난간은 실시공사 위치에 따라 콘크리트 난간 또는 투시형 난간으로 설치되며, 디자인, 색상,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분양목적물의 천장고, 층고 및 레벨은 인접도로 및 공공보행통로의 경사 및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점포마다 다르며,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레벨, 보행통로 및 건축설비 등 현장여건에 따라 천장고, 층고 및 레벨이 일부 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경사로 또는 계단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호실의 경우, 호실 전후면 레벨차에 따른 호실 내부 계단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이는 추후 실 시공시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단차 계획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상가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점포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마감재 등은 전체적인 디자인 계획에 따라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호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일부 호실의 경우 놀이터, 바닥분수, 쓰레기이송설비 등과 인접하여 이용자에 의한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쓰레기 이송설비 및 재활용품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등은 오피스텔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계획된 사항이므로 용도별 구분을 요구할 수 없음
- 힐스테이트 도안 오피스텔, 상업시설은 복합건물로 주차장은 용도별로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계획주차대수에 해당하는 주차장 영역으로 구분 산정 되었으며, 주차 관리 및 운영은 통합관리가 원칙이며 향후 자치관리기구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복합시설은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있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은 용도별로 계획주차대수에 의해 주차 배정 시 건물 내 일부 설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차 관리 및 운영은 사업관계자 또는 관리업체가 정하는 관리규정이나 입점 후 편성 운영된 자치관리단체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주차장 일부는 비상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로가 계획되어 사용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됨을 유의 바람.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는 2.7m로 택배차,조업차량은 지하1층까지만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1층 일부~지하5층까지의 주차장은 오피스텔용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오피스텔용 주차장은 이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의 납부는 입점자 또는 계약자가 관리비로 부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인, 허가 및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은 공유시설로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업체는 계약자 및 임차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자 및 임차인은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으며 주자장의 점포별 분할면적이나 위치 지정도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람.
- 상가 앞 식재로 인해 조망, 채광 등이 불리할 수 있고 간판 가시성에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점포별 유의사항**
-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용도인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내 업종으로 개점하여야 하며, 사용용도를 벗어난 업종의 입점은 불가함. 또한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하여서는 입점자 상호간에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관계자는 이에 관여하지 않음.
- 인허가 조건, 건축허가조건, 각종 심의조건, 각종 인증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공공보행통로 등) 단지 내 · 외 시설물, 조경 계획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을 계약자가 사전에 인지해야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shop-front(점포입면) 변경시에는, 단열성능 및 피난규정에 맞도록 창호의 성능과 크기/위치 등을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규정의 준수 의무는 입점자에게 있음.
- 점포별 간판 설치시, 준공도면에 표기된 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기준의 변형이나 조정은 입점자간의 관리규약에 의해 운영 하되, 관련 지자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호실별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 시 면적 및 지분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점포별 간판의 위치는 사업관계자가 지정해준 위치에 한해 지자체 옥외광고물 규정에 의해 설치하여야 함.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본 분양목적물, 주변 건물 및 시설물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관계자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됨.)
- 입점 후 본 분양목적물에 다양한 업종의 입점 및 시설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본 분양목적물 점포에 대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사항(영업허가, 용도변경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허가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 사업관계자는 위 표시물에 대하여 건축인 · 허가 당시의 법규에 따라 사용승인을 필한 이후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점자 또는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함.
- 미술장식품의 형태, 크기, 위치는 향후 관계기관의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호실은 옥외에 설치되는 조경 및 기타시설물 설치로 인해 소음, 조망, 접근성 등이 방해를 받을 수 있음.
- 입점 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입점 업종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준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분양목적물의 입점지정 기간은 오피스텔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 및 수인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경관조명, 옥상조경 및 기타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점자 또는 계약자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함.
- 본 복합시설은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상호 간섭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비상계단, 비상 엘리베이터 등 소방/피난 관련 시설은 비상시나 관리용으로 타 시설과 공유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인 · 허가 상의 기준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 · 허가 상의 제반조건 및 법규 기준에 대해서는 계약자 및 입점자에게 준수의 의무가 있음.
-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관계자의 상호, 브랜드 및 로고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출입구 및 도로 등은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 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 구획은 불가함.
- 본 분양목적물 관련시설 건물 및 단지 내 · 외부 시설물의 디자인, 형태 등은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본 분양목적물의 배치, 구조 및 실별 위치, 향과 층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계약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본 분양목적물의 화장실은 관련법규에 따라 공중 화장실로 이용되므로 임의로 출입을 제한할 수 없으나, 관리규약을 통해 일정시간에는 제한할 수 있음.
- 향후 점포 구획이 변경될 경우, 인접 피난계단의 유효거리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 후 구획하야여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점자가 부담함.
- 본 분양 목적물의 조경, 세부 식재계획, 지장물 및 시설물 등이 위치하여 일부점포는 가시성 및 접근성 등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그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분양목적물은 건축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점포별 전기 용량은 점포 전용면적 1㎡당 150VA로 계획되어있고, 점포별 증설이 필요시에는 관리주체와 협의 후 한국전력에 추가 전기사용 신청 후 한전의 책임분계점에서 점포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증설하여야 함.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건축물은 위탁자 (주)자이언트, 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및 사업약정(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주)자이언트이며,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시행위탁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사업부지(향후 사용검사 예정인 본 건축물을 포함)에 대한 신탁계약 해제나 해지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주)자이언트와 수탁자(본 분양광고 상의 '분양사업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분양대상물건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시행위탁자인 (주)자이언트에게 포괄 면책적으로 승계 됩니다.

■ **사업관계자**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위탁자	(주)자이언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45, 1806호(봉명동)	160111-0512312
시행수탁자, 분양대금관리자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10111-1617434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110111-2153015
분양대행사	(주)정석하우징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3, 569호(역삼동, 송촌빌딩)	110111-6617637
감리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46길 8(논현동, 동일빌딩)	110111-0553720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교보자산신탁(주) / 사업장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16층(대치동, 대치타워)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80008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분양대상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용도 · 규모
  ①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677-1~2
  ② 지목 : 대
  ③ 용도 : 오피스텔 및 판매/근린생활시설
  ④ 규모 : 지하 5층 ~ 지상 최고 29층 (오피스텔 지상 2층 ~ 지상 29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1단계)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 등기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67-5 3층 (T. 042-825-6999)
※ 본 분양광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관계자로 문의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힐스테이트 도안
| 상업시설 |

042-825-6999

시행 KYOBO 교보자산신탁 위탁 GIANT 시공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위치도
트리풀시티 9단지
휴먼시아 10단지
대전 아이파크 시티
대전시립 박물관
도안문화공원
대전복용초 (예정)
홍도초
라도무스 웨딩홀
도로교통공단
전북은행
힐스에비뉴 도안
파리바게뜨
목원 대학교
현장 : 대전 유성구 용계동 677-1, 2(도안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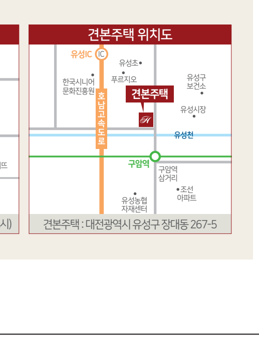
견본주택 위치도

견본주택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67-5